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 415-32	(전화번호 75-6593)	진. 계. 규. 정. 조. 상. 수
처리기간	제 2 부 시 장		
사행일자	7/11/77		
보존년한	결재 77. 4. 10. 제 2 부 시 장		

보조기관	도시계획국장				원	법무담당과 (도시안심사)
	도시계획과장					시민과장
	지역계획과장					통합계획계장
기안책임자	권 안	75. 3. 11.				

경유	과 안 참 조	반	시 장	5
수신		신		
참조				

계 목 : **신용도시계획 용도지역지정승인**

제 1 안 : **내부검제**

1. 당시관내 ~~도봉구락동 42번지 일대, 중계동 아가동 549번지 일대, 상곡구락동 534번지 일대 등 내촌구관동동, 단감리동 295번지 일대, 중구 동자동, 용산구감월동, 효창동, 문배동, 한강로 1, 2, 3가 원료로 1, 2, 3가 일부지역에 대하여 건설부고시 제198호(71.4.7)로 용도지역~~

일부 변경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용도 지역중 상언지역에 대하여 71.4.7. 이전 지형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현재 심의 안토 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73조와 건설부고시 제123호(73.4.4)의 규정예외의 지 다음과같이 지적승인하고 법안과같이 시행토록 하오니

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지정승인 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발 송
상언지역	도봉구락동 42번지 일대 일부지역	46,250		발송
"	도봉구 중계동, 아가동 일부지역	64,800		

상업지역	상복부일부동 534번지 일대 일부 지역	187,388	㎡
상업지역	동태문구 권농동, 탑십리동 295번지 일대 일부 지역	58,560	㎡
"	중구동 자동, 용산구 갑열동, 후향동 , 문배동, 한강로1,2,3가. 원효로1,2,3가 일부 지역	1,293,350	㎡

첨부. 지적승인호서1부. 같.

제2안 고시안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서울 도시계획 용도지역지정승인

1. 건설부고시 제98호(71.4.7)로 일부 변경결정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한 것이 도시계획법 제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123호(73.4.4)에 따라 이통고시한다.

2. 관계로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첨부 1. 도면상략

2. 지적승인포서(도면표시와 같음)

1975. 3.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지정승인포서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상업지역	중구동 자동, 용산구 갑열동, 후향동 일대 일부 지역	46,250	㎡
"	중구동 자동, 용산구 갑열동 일대 일부 지역	64,800	㎡
"	상복부일부동 534번지 일대 일부 지역	187,388	㎡
"	동태문구 권농동, 탑십리동 295번지 일대 일부 지역	58,560	㎡
"	중구동 자동, 용산구 갑열동, 후향동	1,293,350	㎡

본 배동, 한강로1,2,3가 원효로1,2,3가	
일부 지역	
*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제3안	
수신 건설부장관	박신 시장
제목 동 건	
1. 건설부고시 제798호(71.4.7)로 일부 변경 검점고시된 당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중 상업지역일부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73조와 건설부고시 제723호(73.4.4)에 따라 별첨고시문 사본및 도면표시와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고시문 사본및 관계도면 각1부.	
제4안	
수신 수신차장	
제목 동 건	
1. 당시관내 도봉구, 미아동, 중계동, 하계동 일부지역. 성북구 원곡동, 동대문구전농동, 단심미동, 중구동자동. 용산구 갈월동, 효창동 본 배동, 한강로1,2,3가 원효로1,2,3가 일부지역이 건설부고시 제798호(71.4.7)로 변경 검점 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73조의규정과 건설부고시 제723호(73.4.4)에 따라 별첨고시문 사본및 도면표시와같이 지적승인 하였으니	
2. 관계도서는 귀청(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일것이며 본지역 유지관리와 제반업무및 건축대지중명 발급에 안전을 기하기바람.	
수신처: ● 봉곡구청, 성북구청, 동대문구청, 중구청, 용산구청	
첨부. 고시문 사본및 관계도면 각1부. 끝.	

제5안

수산 용부 청양읍(시: 용부시장)

발신 시장(과장)

제목 관(시)보 게재외뢰

1. 다음과 같이 관(시)보 게재를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시)보 게재구분: 고시

나) 관(시)보 게재연명: 도시계획응도지역지정승인

다) 연정근거: 도시계획법 제3조

첨부: 고시문 사본 각2부(1부). 끝.